

1. 개정이유

바람에 의한 흩날림 등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인증자격에 대한 처분기준을 개선하여 과정 중심의 인증제로 개편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인증사업자 등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방법 개선(안 제63조)

나. 부부 등 가족에 한하여 친환경 농산물 공동생산자의 표기를 허용하여 청년농 진입 유도과 부부 등 공동생산자의 권익을 보호(안 별표7 및 별표 제4호 서식)

다. 친환경 인증농가가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에 따라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농약이 검출된 경우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자격을 유지하여 선의의 농가 피해를 방지하고 과정중심 인증제로 전환을 유도(안 별표9)

라. 인증신청 단계에서 친환경 농산물 공동생산자를 등록하여 그 지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을 수정하여 규제 완화(안 별지 제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관리하며”를 “관리하거나 법 제53조의2에 따른 유기농
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
리할 수 있으며”로, “법 제53조의2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
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가) 인증서에 기재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된 공동 생산자명을 인증사업자
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나) 단체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괄호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9 제2호가목3)나)(2) 위반행위란 (2) 중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잔류허용기

준 이하로 검출된”을 “검출된”으로 하고, 같은 목 3)마)(3) 위반행위란 (3) 중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식품”을 “유기가공식품·비식용 유기가공품”으로 하며, 같은 목 3)바)(2) 위반행위란 (2) 중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을 “검출된”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증신청서(생산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0일(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	------	---------------------------------------

신청인	신청단위 [] 개인, [] 법인, [] 단체		
	성명(공동 생산자명)		
	법인 또는 단체명(생산자 수)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의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선택사항)	
법인·단체(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인증구분 []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 유기축산물, [] 유기양봉의 산물등 [] 무농약농산물		
	신청구분 [] 인증 신청, [] 인증 갱신신청,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7조(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인증 신청, [] 인증 갱신신청,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

귀하

첨부 서류	1. 인증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규칙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나. 규칙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다.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라. 유기농축산물·유기농축산물·유기양봉의 산물등·무농약농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2. 인증 갱신신청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규칙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나. 규칙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다.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라.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인증 갱신신청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되며,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 수 료 규칙 제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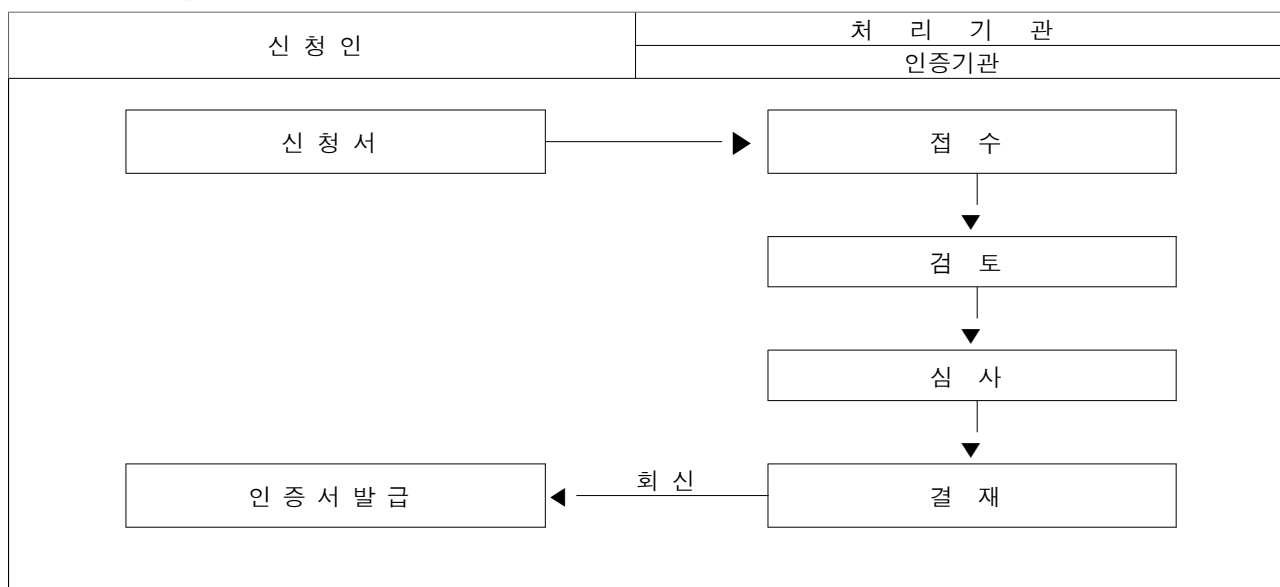
1.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앞쪽의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은 앞쪽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보를 활용한 안내 및 홍보,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지원 및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은 앞쪽의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앞쪽의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신청인의 농업경영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은 앞쪽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증수수료와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통합하여 고지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은 앞쪽의 의무거출금 통합 고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지서가 각각 발급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작성내용은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신청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 표를 하며 개인의 경우 공동생산자를 생산품에 표기하려면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실제로 영농을 같이하는 가족에 한하여 공동 생산자로 기입할 수 있으며, 단체의 경우 소속된 생산자 수를 단체명 옆에 괄호로 적습니다.
- 법인·단체(대표자)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란에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 신청품목란에는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예를 들어, 고추와 고추씨, 고춧잎을 판매하려는 경우 고추, 고추씨, 고춧잎을 모두 인증 신청품목으로 적어야 합니다).
-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생산계획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 ①·② (생략)	제63조(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시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을 해당 공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u>법 제53조의2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u> 에 게시해야 한다.	③ ----- ----- ----- ----- ----- ----- 관리하거 나 <u>법 제53조의2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u> 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 <u>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u> --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